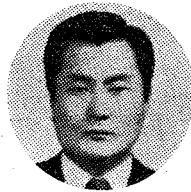


技術導入自由化指向과 企業의 対策

特許的條件等 留意事項包含



① 序 言

우리나라는 지난 15年間 세차례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 途行으로 輸出의 劃期의 增大와 持續의 総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劃期의 総發展에는 輸出主導型의 工業政策과 이를 뒷받침한 外國先進技術의 導入活用에 힘입은바 有きました을 否認할 수 없으며 國內賦存資源이 不足한 우리의 實情을勘案한다면 앞으로의 成長戰略도 이러한 基盤위에서 追求되지 않으면 不可避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企業은 主要 先進國家의 保護貿易主義傾向과 後發開途國의 競爭參與등으로 對外의으로 어려운 狀況에 直面해 있으며 對內의으로도 產業構造의 改編이나 對外競爭力의 提高등의 課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 經濟가 繼續의 輸出市場을 確保해 나가고 國際協力を 보다 지속적으로 擴大해 나가기 위하여는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이 不可避하다.

이러한 過程에서 우리 경제가 國際社會에서의 比較優位를 확보하여 성장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技術水準의 提高에 의한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國際競爭力의 強化가 時急한 실정으로 國內技術水準의 向上을 위한 外國先進技術의 積極의 導入活用과 自主的 技術開發體制의 確立이 切實히 要請된다.

우리나라의 經濟發展段階과 類似한 日本의 경우를 보면 1965年을 起點으로 產業構造가 先進國型으로 變化하기 始作하여 急速한 重化學工業화와 이에 따른 技術革新이 加速化되었고 이에 따라 低生產部門으로부터 高生產部門으로, 加工度나 附加價值가 高은 分野로부터 높은 분야로 生産구조가 變화되었으며 또한 技術革新的 設備投資가 飛躍의 輸出으로 확대되어 외국 선진기술의

朴鍾根

<經濟企劃院 外資契約審議官>

도입이 積極화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급속한 輸出伸張과 重化學工業中心의 산업구조의 移行過程에서 低賃金에 바탕을 둔 勞動集約의 產業으로부터 創造의 研究開發을 主軸으로하여 이루어지는 技術集約의이며 頭腦集約의 산업으로의 積極의 研究開發이 不可避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製品의 品質向上과 高級化에 의한 競争력의 提高만이 우리 경제가 후발개도국의 추적을 물리치고 先進工業國家의 隊列에 落伍점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에 技術自立의 深化와 기술혁신의 促進이 요청된다.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自體技術開發의 개발에의 時間的·經費的 어려움으로 因하여 외국선진기술의 도입이 積極勸獎되어 왔으며 이러한 技術導入에는 開發初期의 國內經濟의 5件이나 企業의 對外適應ability의 未備로 인해 政府의 後見의措導가 不可避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기술수준이나 民間企業의 自主的判斷能力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外貨事情이 好轉되는 등 國內經濟의 與件이 成熟되어 기술도입에 대한 選擇과 決定을 企業의 自律의 判斷에 맡길 수 있는 時期가 到來한 것으로 보아 기술도입의 段階의 自由化를 斷行케 되었다.

② 技術導入自由化的 内容

1. 技術導入 現況

1962年 外資導入法制定以來 77年末 現在까지 우리나라의 技術導入 總件數는 907件으로서 鐵工業部門이 全體의 92.8%로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며 代價支拂額은 17千萬弗에 이른다.

그러나 日本이 기술도입에 대한 1次 自由化를 단행

했던 68년까지의 技術導入件數 11,600件이나 76年까지의 技術導入 累計 28,100件에 比하면 우리나라의 기술 도입은 아직도 매우 低調한 실정이다.

分野別 技術導入実績

區 分	農林・ 水產業	礦工業	社會間 接資本	合 計	代 價 支拂額
62~66	—	26	4	30	0.78
67~71	7	248	19	274	16.26
72~76	1	411	21	433	96.51
77	1	157	12	170	58.06
合 計	9	842	56	907	171.60
構成比 (%)	1.0	92.8	6.2	100	—

또한 이를導入國別로 보면日本이全體의 62.1%로過半數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美國 23%, 西獨 4.3%의順으로기술의경우에도對日偏重이深化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日本과의言語의類似性, 地域的近接性, 活用의容易性등의利點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으나우리의立場에서는日本의기술이歐美諸國으로부터의導入比重이컸던點을勘案한

國別 技術導入實績
77.12.31現在 (單位：件)

區 分	美 國	日 本	西 獨	佛 蘭	西 他	其 他	合 計
62~66	12	10	4	1	4		30
67~71	58	197	5	—	14		274
72~76	88	280	14	6	45		433
77	51	77	16	5	21		170
合 計	209	564	39	12	83		907
構 成 比 (%)	23.0	62.1	4.3	1.4	9.2		100

때에 낙후된 2 次的 間接技術의 導入素地가 깊음을 알 수 있다.

2. 現行 技術導入認可制度

外資導入法에서는 우리나라 民國이 外國人으로부터 工業所有權 其他技術의 讓受와 그 使用에 인한 權利로서 代價의 支拂을 對外支拂手段에 의하고 支拂期間 또는 契約期間이 1年以上의 單純한 用役이 아닌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은 經濟企劃院長官의 認可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그 節次는 아래 圖表 1과 같다.

3. 技術導入自由化方案

技術導入自由화의 基本方向은 防衛產業, 原子力, 컴퓨터를 除外한 모든 分野의 技術에 대하여 一定基準에 該當하면 自動認可하되 앞으로 經濟與件의 成熟段階에 따라 自由化幅을 漸進的으로 擴大해 가며 導入面에서의 自由化推進과 併行하여 管理面에서도 기술도입의 消化改良을 촉진할 수 있는 支援策을樹立, 施行해 質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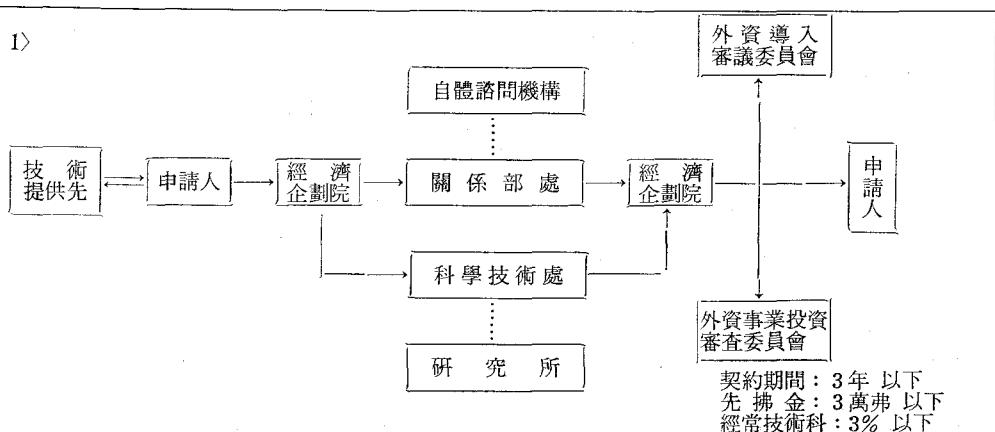
(1) 技術導入認可方法

기술도입자유화에 따른 認可方法은 自動認可方式, 準自動認可方式 및 個別審查方式을 併行實施하여 二對象은 아래 圖表 2와 같다.

自動認可對象技術導入契約은 이를 個別審查하지 아니하고, 主務部長官이 卽時 認可하되 當該契約이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동으로 가하지 아니한다.

- ① 單純한 意匠 또는 商標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② 原資材, 部分品 또는 部屬品의 販賣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③ 顯著한 不公正 및 制限的 内容을 包含하고 있는 경우

〈圖表 1〉



〈圖表 2〉

契約期間	3年 以下	3年超過 10年 以下	10年 超過
分 野 代 價	① 先拂金 3萬弗 以下 經常技術料 3% 以下 ② 定額 10萬弗 以下	① 先拂金 100萬弗 以下 ② 經常技術料 10% 以下	① 先拂金 100萬弗 超過 ② 經常技術料 10% 超過
	自動認可	準自動認可	個別審查
機械, 造船, 金屬, 電氣, 電子, 化學 및 纖維產業			
其他 產 業	① 20日 以內 關係部處 異見없는 경우—自動認可 ② " 異見있는 경우—技術審委上程		
原子力, 램프 및 防衛 產業		技術審委終決	外審委上程

④ 科技處長官이 告示하는 國內開發必要技術을 도입하는 경우

⑤ 도입코자하는 기술이 低級 또는 落後技術인 경우
자동인가 및 個別審查對象 以外의 技術導入契約(準自動認可)은 主務部長官의 檢討를 받도록 하되 20日以内에 特별한 의견을 提示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인가하며 特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技術導入審查委員會(新設)의 審議를 거쳐 經濟企劃院長官이 인가한다.

個別審查對象技術導入契約은 關係部處 意見照會後 技術導入審查委員會 및 外資導入審查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경제기획원장관이 인가한다.

다만, 原子力, 램프 및 防衛產業分野의 기술로서 契約期間이 10年 以下이고 先拂金이 100萬弗 以下이며 經常技術料가 10% 以下인 경우에는 技術導入審查委員會의 심의로서 인가한다.

(2) 技術導入契約 審查事項

現在 技術導入契約可時에는 기술도입의 必要性 技術의 内容 및 提供方法, 기술도입의 대가 및 지불방법, 계약기간 등 8個項目에 대하여 그 妥當性 내지 必要性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中 技術代價의 支拂方法, 生產販賣計劃 및 原料調達法과 製品價格의 妥當性에 관한事項은 檢討對象에서 除外하고 國內의 自主的 技術開發의 決善與否를 追加하여 技術導入契約可時 審查事項을 6個項目으로 縮小調整하였다.

(3) 技術導入審查委員會

從前의 外資事業投資審查委員會의 審查對象이 되던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審議機構로 技術導入審查委員會를 새로이 設置하였다. 同委員會는 經濟企劃院의 經濟協力次官補를 委員長으로 하여 關係部處의 局長級과 民間人 2人을 包含한 12人 以內의 위원으로 構成하였으며, 그 機能은 準自動認可事項으로서 주무부 장관이

특별한 의견을 回送한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과 개별심사대상의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및 其他 經濟企劃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主要審議對象으로 하고 있다.

③ 技術導入自由化에 따른 企業의 對策

우리나라는 工業화의 歷史가 짧아 基礎的인 技術蓄積이 貧弱하고 企業에 의한 自主的研究開發이 企業人の 認識不足 내지는 規模의 零細性 등으로 不振한 狀態에 있어 不得已 技術革新의 手段으로서 외국선진기술의 도입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國際化過程에서는 解決하여야 할 많은 課題가 놓여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한 國際競爭力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으로 4次 5個年計劃期間中에도 기술의 혁신과 能率의 향상을 主要政策目標로 設定하여 자주적인 기술개발의 촉진과 외국선진기술의 導入活用을 통한 기술의 土着化를 積極誘導하고 있다. 특히 經濟構造가 單純加工의 輕工業에서 重化學工業으로 옮겨가는 轉換段階에 들어감으로써 技術需要가 急激히 증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技術技能人力의 需要도 爆發的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副應하기 위한 技術水準의 提高와 人力供給能力의 확대가 主要政策課題로 되어있다.

政府는 이미 KIST內에 技術導入相談센타와 技術導入資料銀行(data bank)을 設置 運用하여 기업에게 海外技術情報의 提供과 기술도입에 관한 指導相談을 實시하고 있으며 導入技術의 토착화와 創意의改良發展을 制度의으로 支援, 促進하기 위하여 技術開發回轉基金의 설치 등 國내기술개발을 加速化시키기 위한 諸般政策의 支援策을 檢討중에 있다.

한편 기업도 技術導入制度의 方向轉換에 따라 이에

해처할 受容態勢의 確立이 要求된다. 특히 앞으로 기술도입을 量的으로 상당히 증대할 것으로豫想되며 이에 따라 類似技術에 대한 企業間의 過當競爭이나 重複導入이 우려되므로 기술의 選別導入이 요구된다. 특히 그간의 우리나라 기술도입은 特定地域 즉 日本地域에 지나치게 集中되어 있어 기술의 對日依存度가 높은 바이는 結果的으로 落後·斜陽技術의 도입을 招來하는 한편 施設財나 原·副資材의 輸入依存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對日依存을 深化시키는 否定的인 側面이 있어서 왔다.

따라서 日本을 통한 間接技術 대지 2次의 技術의 도입을 止揚하고 歐美先進國의 源泉技術을 도입하여야만 우리 기술수준을 높일 時日안에 先進國水準으로 提高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技術導入先의 多邊化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도입기술이 核心的인 기술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모든 기술을 技術提供先에 의존하려는 傾向이 강하여 國內技術開發意慾을喪失케 하거나 국내기술의 發表을 阻害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中華 학공업의 建設 및 輸出產業의 國際競爭力提高와 國內賦存資源의 活用에 寄與度가 큰 부분의 기술도입에 優先順位를 두어야 할 것이며 國內機械工業의 발전이나 技術用役能力에 비추어 필요한 核心的인 기술만을 도입 토록하여 국내기술의 蕩蕪과 自立度를 提高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개발에 있어서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等閑視되기 쉬우나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기술개발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나 그간의 国내기업의 自主的 研究開發이나 도입기술의 消化改良努力은 諸與件의 不備로 인해 부진한 感이 없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발에 加一層拍車를 가하여 기업의 自體技術蓄積으로 도입기술의 波及效果를 極大化하고 외국기술의 토착화를 早期에 이를 수 있도록 기업체 자체 또는 外部研究機關의 활용등에 의한 자체기술개발을 적극화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技術人力開發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 국내기업이 기술도입의 經驗이나 交涉能

力이 不足하여 不利한 條件(支拂期間의 長期, 높은 代價, 原·副資材의 購入先制限, 輸出地域 및 數量制限 등)의 계약이 締結되는 事例가 많아 기술도입의 效果를 減少시키는 傾向이 많았던바, 앞으로는 기술도입이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契約條件의 改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④ 技術導入契約締結時의 留意事項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對象事業 및 對象技術의 선택이나 技術供與者的 選定以外에도 계약내용이 기술도입의 成敗를 左右하는 중요한 要素이므로 技術導入者는 技術導入交涉이나 契約書의 作成過程에서 아래 사항을 慎重히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 가. 提供技術의 내용 및 방법
- 나. 獨占 또는 非獨占的 實施權
- 다. 提供特許의 法的有效性
- 라. 기술도입의 대가
 - ① 純賣出額 定義
 - ② 技術用役代價의 確정과 外貨 및 원貨費用 區分
- 마. 保證責任
 - ① 工業所有權의 紛爭解決(特許保障)
 - ② 品質保證 또는 管理(品質保證)
 - ③ 技術情報의 同一性維持(技術保證)
 - ④ 技術情報의 瑕疵責任(瑕疵保證)
- 바. 契約期間滿了後의 繼續使用
- 사. 개량기술의 相互無料提供
- 아. 商標使用的 制限
- 자. 기술도입자에 대한 最惠待遇條項
- 차. 不公正 또는 制限의 去來條項
 - ① 원자재등의 購入先制限
 - ② 契約製品의 판매와 關聯한 數量, 價格, 地域, 輸出先등의 제한
 - ③ 競爭的技術의 사용이나 競爭的製品의 取扱制限
 - ⑤ 계약기간중의 개량기술에 대한 相互互惠의 提供의 제한
- 카. 準據法, 解約, 正文, 仲裁, 不可抗力, 全體契約條項등

(新) (刊) (豫) (告)

「意匠登録索引全集」(限定版)發刊

豫約注文 Tel. 25-2830, 26-5978